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 3. 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2. 20.

다. 상정일자: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4. 2. 28.)

상정, 심사, 보류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4. 3.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깨끗한마포과)

가. 제안이유

폐기물 소각량의 증가로 인해 대기오염과 기후 환경 변화 등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마포구민을 보호하고 폐기물의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출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3)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 4) 기본계획, 재활용가능자원 및 분리·보관 배출 의무(안 제7조~제9조)
- 5)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안 제10조)
- 6)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안 제11조)
- 7) 커피찌꺼기 재활용(안 제12조)

- 8)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안 제13조)
- 9) 종량제폐기물 수수료(안 제14조)
- 10) 자금 등의 지원(안 제15조)
- 11)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협의회 업무
(안 제16조~제17조)
- 12) 교육·홍보, 과태료 부과·징수 등 및 시행규칙(안 제18조~제20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나) 「폐기물 관리법」
-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기타

- 가)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1호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나) 행정규제 사전심사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 평가결과 : 개선 권고(제13조제3항)
- 라) 성별영량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마포구는 현재 서울시의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에 있어

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입지 선정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받고 있고, 아울러 입지 선정 과정의 하자과 위법사항들의 설명 없이 일방적인 마포구민의 희생만 요구받고 있음.

- 이에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가운데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음.

나.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편파적이고 입지 선정 과정의 하자과 위법사항들로 추진된 ‘마포구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적인 마포구 환경을 구현하여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임.
- 「폐기물 관리법」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보전 의무를 다하고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과 사업자의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마포구가 직면한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따른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이행, 소각장과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할당제 실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소각량 감소를 위한 폐기물 감량 패러다임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든 위원이 공감함.

-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 등 입법의 일반적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①적법절차의 원칙, ②과잉금지의 원칙, ③체계정당성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표결(전자투표) 실시

[관 계 법 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에는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및 일반지역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규격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